

碩士學位論文

外貨換算의 會計處理 및 報告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專攻

高 聖 浩

2003年 12月

外貨換算의 會計處理 및 報告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指導教授 李相奉

高 聖 浩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 年 12 月

高聖浩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 員 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03 年 12 月

# 【 目 次 】

## 제 1 장 序 論

- 제 1 절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1
- 제 2 절 研究의 方法 및 範圍.....3

## 제 2 장 外貨換算會計의 理論的 考察 및 先行연구

- 제 1 절 外貨換算會計의 概念.....5
- 제 2 절 外貨換算 方法.....10
- 제 3 절 外貨換算 損益 會計처리 方法.....15
- 제 4 절 外貨換算會計와 관련한 先行研究 검토.....17

## 제 3 장 外換換算 會計基準의 國際的 比較 및 分析

- 제 1 절 外貨換算 會計基準의 발전과정.....20
- 제 2 절 外貨換算 會計基準의 國際的 比較..... 25
- 제 3 절 外貨換算 會計基準의 比較, 要約.....53

## 제 4 장 우리나라 外貨換算會計處理 및

### 報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                         |    |
|-------|-------------------------|----|
| 제 1 절 | 우리나라 外貨換算 會計處理의 問題點     | 55 |
| 제 2 절 | 企業會計基準 및 法人稅法상의 改善方案    | 57 |
| 제 3 절 | 企業의 外貨換算과 관련된 換差損 相殺 方法 | 58 |
| 제 4 절 | 우리나라 外貨換算基準의 改善方案       | 61 |

## 제 5 장 要約 및 結論



## 【 표 목 차 】

|            |  |    |
|------------|--|----|
| [표 2 - 1]  | 外貨換算 會計處理 방법의 비교 .....   | 13 |
| [표 3 - 1]  | 機能通貨의 결정방법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 .....  | 31 |
| [표 3 - 2]  | 各 基準書에 포함된 헷징회계의 내용 .....  | 32 |
| [표 3 - 3]  | 각국 기준에서의 외환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외환<br>손익에 대한 용어의 비교 .....                                | 34 |
| [표 3 - 4]  | 各 기준에서의 換率에 대한 정의 비교.....  | 39 |
| [표 3 - 5]  | 순 투자에 대한 헷징과 관련된 각 기준에서의<br>관련 규정 비교.....                                      | 40 |
| [표 3 - 6]  | 報告通貨의 換率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損失에<br>대한 각 기준에서의 會計處理 비교 .....                            | 41 |
| [표 3 - 7]  | 모기업 영업활동의 한 부분인 해외사업장의<br>회계처리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                               | 45 |
| [표 3 - 8]  | 기업결합에서 매수법 회계로부터 발생하는 영업권과<br>공정가치 조정을 환산하는 경우 현행 환율의<br>사용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 ..... | 46 |
| [표 3 - 9]  | 貸借對照表일 이후의 換率變動 조정에 대한<br>각 기준에서의 회계처리 비교 .....                                | 47 |
| [표 3 - 10] |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의 외화로 보고 되는<br>해외사업체의 財務諸表를 報告通貨로 환산하는<br>경우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   | 48 |
| [표 3 - 11] | 해외사업체의 처분에 대한 비교.....  | 50 |

[표 3 - 12] 공시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 51  
[표 3 - 13] 각국의 외화환산 회계 처리의 비교 .....52



# 제 1 장 序 論

## 제 1 절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은 1990년대 시장 평균 환율제도(Market Average Rate System)가 도입된 이래 특히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자유변동 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로의 전환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환율변동이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기업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그 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경제 환란 이후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외환보유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최근까지 국내에 많은 외국 투자기업이 생산설비나 판매지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가 늘었고, 국내기업들도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대외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거래가 잦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환노출과 그에 따른 환리스크 관리도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장,단기 구분 없이 당기손익으로 모두 인식하여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환율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로 인하여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영업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환차손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거나,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로 해외차입을 제한 받거나 금융조달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화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미 실현이익인 환차익 때문에 경상이익이 발생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외화환산 관련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외화거래의 개념에 대한 언급 없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과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문식인 현행기준은 설명식인 국제기준이나 미국기준에 비하여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시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 분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의 개념에 의해 외화환산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준이나 미국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1)2)

이외에도 현행 우리나라 기준은 외화환산손익의 처리지침 등 외환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그 설명이 결여되었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미국기준을 검토하여 환율의 변동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맞게 인식할 수 있도록 외화환산 회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준과 미국 및 국제기준과의 큰 차이점 중 한국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데 반하여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걸 들 수 있다. 한국기준에서는 외화환산과 관련, 개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준칙의 제9조와 제10조에서 해외종속회사 등의 재무제표환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능통화의 개념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독립된 외화환산 규정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3)

1)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라는 용어는 FASB Statement 52에서 언급된 용어이며, 국제기준에서는 기능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기준에서의 기능통화를 통하여 설명하는 내용과 국제기준에서의 설명내용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기준에서는 기능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개념의 설명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2)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영업, 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제기준이나 미국의 기준에서 기능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회계처리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기업 내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산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제 2 절 研究의 方法 및 範圍

일반적으로 미국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회계방법에서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기준의 경우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기준 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할 경우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이러한 대체적인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였다. 또한, 미국기준은 대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비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의 처리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본주의체계가 매우 발전된 단계의 국가로서 기업들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복잡한 상황 하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비용·효익의 측면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한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익 측면에서의 적절성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 세부적인 규정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일부 규정은 국제기준을 준거하였고, 일부는 미국기준을 준거하였다.

3)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기업의 외화환산이란 보고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거나 측정된 금액을 보고기업의 보고통화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외화표시 거래의 환산과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화환산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중요한 문제는 첫째,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며, 둘째, 환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산 손익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외화표시 거래의 환산에 있어서는 거래 발생 시점과 대금 결제시점사이에 환율이 변동될 경우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전환 방법만 결정하면 되므로 비교적 쉽게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있어서는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회계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자국통화이외의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회계정보를 정보내용의 변경 없이 어떻게 하면 자국통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U. S. GAAP,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AS) 등을 비교하며, 현 기준을 서술식으로 개선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화환산손익 회피방안으로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생상품 중 선물환거래를 이용하여 외화환산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부채의 리컨스트럭처링(Livolotoes - restructuring)을 통한 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한계점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의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2장에서는 외화환산의 의미와 외화환산방법 및 환율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화환산 회계처리 방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분석, 비교하여 우리나라 외화 환산 회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화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의 개선방안과 외화환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제4장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 제 2 장 外貨換算會計의 理論的 考察 및 선행연구

### 제 1 절 外貨換算會計의 概念

#### 1. 외화환산의 의의

기본적으로 회계는 화폐가 경제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공분모라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즉, 회계 실체의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단위를 이용하여 측정, 기록, 보고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이나 국가마다 통화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회계보고에 이용되는 화폐단위는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외화환산이란 일국의 통화로 측정표시 되는 금액을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타국의 통화로 측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외화표시 거래나 해외활동에서 거래되는 두 가지 이상의 통화를 환율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한 가지 통화단위로 환산하여야 하는 과정이다.

외화환산회계는 외화로 측정된 거래를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외화환산은 외화환산이 되는 대상에 따라 첫째로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의 외화표시 거래의 환산, 둘째는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마지막으로 선물환 거래의 환산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표시 거래의 환산이란 외화로 표시된 상품매매거래, 외화자금의 대차거래 등을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이란 외화로 표시된 재무제표 전체를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는 선물환 거래의 환산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를 미래의 특정일에 특정 환율로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었을 때의 환산을 말한다.

외화표시 거래의 환산은 재무제표 중 일부를 환산하는 반면에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은 재무제표 전체를 환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외화환산의 주된 목적은 환율변동이 재무제표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인식, 보

고하는데 있으며, 환율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고 있고, 기업의 해외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외화환산회계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외화환산회계의 중요사항은 적용환율, 외화환산방법, 외화환산으로 발생하는 환산차액의 처리문제로 나눌 수 있다.

## 2. 환율의 개념

환율이란 일정시점에서 어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와의 통화비율을 말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외국통화는 마치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환율이라고 하는 매매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론을 환율결정이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가격의 변화에 따른 환차손익을 생각할 수 있다.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대부분의 환율을 미국달러(US\$)를 기준으로 하여 각국 통화의 교환비율로 표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의 표시는  $1\$ = \text{₩}1,200$  처럼 직접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간접환율 표시방법은  $1\text{₩} = \text{US } \$1/\text{₩}1,200$ , 즉  $1\text{₩} = 0.00083$ 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외화환산회계와 관련된 중요환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현행환율과 역사적 환율

현행 환율(current exchange rate)은 당기 회계연도내의 특정 시점의 환율이나 특정기간의 평균 환율을 말하며 역사적 환율(historical exchange rate)은 자산의 취득 혹은 부채의 발생이 일어난 특정한 거래일의 환율을 말한다.

### 2)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Spot rate and forward rate)

외환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금결제를 언제 행하느냐에 따라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나뉘어 진다. 즉, 자금결제일(Value Date)이 현물환결제일(Spot Date) 이내의 거래이면 현물환 거래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선물환 거래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현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현물환율,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선물환율 혹은 예약환율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이라 하면 현물 환율을 말한다.

### 3)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과 집중 환율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은 한국은행이 정부, 정부기관, 주한 UN군 등의 특수 기관과 외환거래 시에 적용하는 환율이고, 집중기준율은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 외환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 4) 대고객율과 대은행율

대고객율은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거래를 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이고, 대은행율(inter-bank rate)은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 5) 매도율과 매입율 (selling rate and buying rate)

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고객에게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고, 매입율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 6) 전신환매매율 (telegraphic transfer rate)

전신환매매율은 외국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외국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송달기간에 대한 금리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 3. 환율의 변동요인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決定된다. 외국환이 국제결제의 주요 수단이고,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상태가 외국환의 수급을 반영하게 되며 환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가 도입됨에 따라서 철저한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되면서 환율변동이 더욱 심해졌다.

환율의 변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

4) [www.keb.co.kr](http://www.keb.co.kr)

### 1) 경제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자율, 통화량,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률을 들 수 있다. 이자율의 상승은 단기자금의 유입을 초래하므로 단기적으로 해당 통화의 즉각적인 강세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해외금리의 하락 또는 국내 금리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GNP증가율을 감안한 통화량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해당국통화의 약세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나라(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통화량 억제에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단기적으로 강세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해당국 통화를 약세시키는 요인이 된다. 어떤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외국에 대하여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가 적자를 실현하는 경우 적자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게 된다. 또한, 어떤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를 보인다.



### 2) 정치적인 요인

정치적, 경제적 정세가 불안할 때는 해당국의 통화를 기피하여 다른 안정된 통화로 투자대상을 바꾸려는 투자자들 때문에 해당국 통화에는 약세 요인이 된다.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유럽통화제도의 위기에 따른 환율급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굵직한 정치적사건이 있게 되면 통상 안정된 통화를 선호하며 미국달러는 강세를 나타낸다.

또한 최근의 미, 일 무역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 불균형을 정치적, 인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3) 기술적인 요인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 자율적으로 단기적인 반등 또는 반락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환율변동 그 자체의 작용에 따라 환율이 변한다.

#### 4) 중앙은행의 정책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자국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금융통제 수단으로 기준율, 할인율 등의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 5)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과 기대

외국환은행, 고객, 중앙은행, 외환중개인 등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경제지표 등을 미리 예측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환율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 환 노출의 종류

환율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자산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 기업의 수익성, 시장가치 등이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외환노출이라고 한다. 외환노출은 환차손과 환차익 모두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기업경영상 환차손이 더 중요하므로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을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라고 한다. 흔히 환 노출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환율변동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노출(translation exposure), 거래노출(transaction exposure), 경제적노출(economical exposure)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 1) 환산노출

환산노출은 본사와 지사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생긴다. 해외지사의 영업활동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외화로 표시된 지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모국의 통화단위로 평가,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환산이라고 하며, 환산노출이란 환산을 할 때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과가 변동될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sup>5)</sup> 박상호, “외화자산의 회계처리와 기업의 재무구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 2000, pp.5-6

## 2) 거래노출

거래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거래의 결제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이 생길 가능성을 말한다. 실제 거래는 환율변동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결제는 환율변동 이후에 행해지는 외환거래이다.

예를 들면, 외화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구입 또는 판매한 경우, 외화표시의 자금을 차입 또는 대출한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선도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그밖에 외화표시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 부담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3) 경제적 노출

경제적 노출은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 그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환율변동기업이 기업의 수익 및 비용 흐름의 크기와 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가치의 변화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노출을 미래기업의 손실 혹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경제적 노출은 환산노출뿐만 아니라, 거래노출에 의해 야기된 변화보다도 기업의 장기적 건전성 때문에 더 중요하다.

거래적 노출은 중기 혹은 단기의 현금흐름의 영향과 관련된 위험형태인 반면, 경제적 노출은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된 위험 형태이다.

# 제 2 절 外貨換算 方法

## 1. 대차대조표의 환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회계실체의 보고통화로 환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을 환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각 방법은 환산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방법, 환산에 적용할 환율의 선택방법, 환산의 결과로 산출되는 환산차 손익의 크기와 처리방법 등을 달리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여러 가지 환산방법이 제시되어 왔는데,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은 화폐성 · 비화폐성법, 현행환율법, 유동성 · 비유동성법, 시제법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화폐성 · 비화폐성법 (monetary-nonmonetary method)

화폐성 · 비화폐성법은 미시간 대학의 S.R. Hepworth교수 및 NAA (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의 Research Report No. 36에서 주장된 후, 1965년 10월 APB Opinion No. 6에서 공인된 방법이다.<sup>6)</sup>

이 방법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항목으로 구분하여 화폐성항목은 현행환율로, 비화폐성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화폐성 항목이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매출채권, 매입채무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 등을 말한다.

비화폐성 항목이란 화폐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서, 화폐액이 일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선수금, 선수 수익등을 말한다.

따라서 위 방법은 화폐성 자산과 모든 부채가 환노출 대상이 되면, 재고자산을 포함한 비화폐성 자산은 노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방법은 비화폐성 자산에 역사적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현금흐름과 관계가 없는 자산의 외화표시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전의 유동성 · 비유동성법에서와 같이 항목의 성격보다는 적절한 일률적 환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계적 분류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단순한 화폐성 · 비화폐성 구분 기준에서는 포괄적인 환산원칙이 도출될 수 없다. 즉, 비화폐성 자산이 시가로 계상될 경우에도 역사적 환율로 환산한다는 것은 적절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 2) 현행환율법 (current rate method)

현행환율법은 1968년 2월 영국공인회계사회(Council of Institute of

<sup>6)</sup> 안경태, “우리나라의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연구”, 논문 1981,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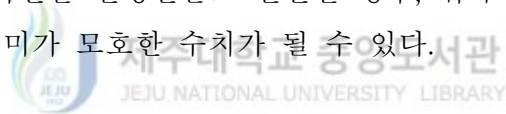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가 처음으로 지지하고 역사적 환율법과 현행환율법 공히 인정된다고 결론지은 바 있으며, 뒤이어 1970년 스코틀랜드 회계사회에서 현행환율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한편 캐나다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행환율법의 적용을 허용하였다.<sup>7)</sup>

현행환율법은 문자 그대로 재외실체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모든 항목에 대하여 당해 실체의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즉, 현행환율법은 회계적 사고를 갖지 않고, 다만 표시수단의 변경일 뿐이다.

앞에서 설명한 세가지 방법은 실제로 현행환율과 역사적 환율의 두 가지 환율을 환산에 적용하므로 복수환율법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환율법은 한 가지 환율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일 환율법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행환율법에는 동일한 기업에 있어서도 고정자산을 환율변동시마다 현행환율로 환산한다면 본국통화로 표시된 취득원가를 매년 수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고정자산을 현행환율로 환산할 경우, 취득원가도 아니고, 제조달 원가도 아닌 그 의미가 모호한 수치가 될 수 있다.



### 3) 유동성 · 비유동성법(Current-noncurrent method)

유동성 · 비유동성법은 AICPA의 「ARB NO.43」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의 구성항목을 유동성인 것과 비유동성인 것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인 것에는 현행환율을 적용하고, 비유동성인 것에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sup>8)</sup>

이 방법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되도록 인식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 비유동성법은 현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의 유동 · 비유동 구분기준이 환산을 위한 환율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회계기간의 영업성과, 특히 재고자산과 관련된 영업성

7) 채규학,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연구”, 1982, p.121. 108.

8) 채규학,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연구”, 1982, p.108.

과를 왜곡시킨다. 즉, 급격한 환율변동기간에서는 단순히 재고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그 평가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환산 후 손익이 크게 변할 수 있다.

#### 4) 시제법 (temporal method)

시제법은 Leonard Lorenson에 의하여 연구된 것이 1972년 6월에 미국공인 회계사회의 회계연구 제12호로 발표된 것으로 속성유지법이라고도 한다.<sup>9)</sup> 이 방법의 근거를 요약하면 외화환산은 측정단위의 변경과정이지 환산이전에 적용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산이전의 측정과정에서 결정된 자산과 부채의 속성이 환산 전이든, 후이든 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환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화폐성 항목은 현행환율로,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화폐성항목 중에는 취득원가인 것, 재취득가격과 시가인 것 등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있는 바, 본래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에는 역사적 환율을 후자에는 현행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방법의 단점은 해외 자회사 등에서 동일한 투자자산을 원가로 계상해 둘 경우와 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할 경우, 전자의 경우는 환산 후 본국통화금액은 불변하나 후자의 경우 현행환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환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가의 변화가 반영되어 다른 본국 통화금액이 도출되므로, 거액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증권, 금융회사 등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지대하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방법에서 대차대조표 각 항목의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구체적으로 요약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외화환산회계처리방법의 비교 C : 현행환율, H : 역사적환율

| 항 목                              | 화폐성-<br>비화폐성법 | 현행환율법 | 유동성-<br>비유동성법 | 시제법 |
|----------------------------------|---------------|-------|---------------|-----|
| 현금, 수취채, 유동부채<br>(화폐성자산과 화폐성 부채) | C             | C     | C             | C   |

9) 황조연, “장기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에 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 홍익대 대학원 세무학 석사학위 논문, 2000, pp. 9-10

|                            |    |    |    |      |
|----------------------------|----|----|----|------|
| 재고자산<br>(비화폐성자산)           | H  | C  | C  | H또는C |
| 고정자산, 투자자산<br>(비화폐성자산)     | H  | C  | H  | H또는C |
| 장기채권, 채무<br>(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 | C  | C  | H  | H    |
| 자본금, 자본잉여금                 | H  | H  | H  | H    |
| 이익잉여금                      | 잔액 | 잔액 | 잔액 | 잔액   |

<자료> 신호영, 「고급재무회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p.455

## 2. 손익계산서의 환산

손익계산서의 환산방법은 대차대조표의 환산과 비교하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점이 없으나, 대차대조표의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손익의 회계처리, 감각상 각비의 계산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의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손익계산서의 환산방법에는 거래발생 환율법, 평균 환율법, 그리고 현행 환율법이 제시되고 있다.

### 1) 거래발생 환율법 (transaction approach)

모든 손익계산서 항목을 매 거래의 발생일자를 추적하여 그 거래의 발생시점의 환율로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익과 비용의 거래시점에서 매 거래를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모든 거래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 평균 환율법 (average rate approach)

평균 환율법은 일부 특수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회계기간

중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익과 비용이 회계기간 중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회계기간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환율, 즉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해도 손익계산서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이연상각비 등은 고정자산 또는 이연계정을 어떤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였느냐에 따라 그 환산방법이 달라진다.

환산차손익도 화폐성 · 비화폐성 또는 시제법에서는 당기의 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 환율법에서는 주주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평균환율을 구하는 방법은 매일의 환율합계를 회계기간일수로 나누어 산출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매월 말의 환율과 연초의 환율을 합계하여 13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도 있다.<sup>10)</sup>

### 3) 현행 환율법 (closing rate approach)

모든 손익계산서 항목을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환율변동이 상당히 큰 경우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익계산서를 환산한다는 것은 기간 중의 수익과 비용을 올바르게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발생 환율법이나 평균 환율법 중 하나를 택하여 손익계산서를 환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편리한 평균 환율을 많이 사용하여 환산하고 있다.

## 제 3 절 外貨換算損益 會計 處理方法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환산방법만큼이나 환산손익의 회계처리 방법도 다양하다.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이연법과 이연상각법, 무이연법이 있다.

<sup>10)</sup> 손기원, 「기업회계기준과 실무전략」, 경영베스트, 1997, p.326.

## 1. 이연법 (Major deferral)

이연법은 외화환산손익을 당해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결지분의 일부분으로 독립하여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평가절상이 있는 회계기간의 기록된 경영성과는 해외영업의 부가 증감된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이런 경우에 일시적인 환산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록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오도 시킬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산손익의 이연법은 외환율예측에 가정하고 있어서, 실무상 적용하는데 매우 어렵다. 예측오류 때문에 영업성과가 잘못 측정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환산손익을 이연시키는 것이 환율변동 추이를 보이지 못한다.

즉, 환율변동은 역사적 사실이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환율등락이 있었을 때 환율등락의 영향을 알았을 때 가장 도움을 받는다.

FAS No.8(199절)에 의하면, “외환율등락 : 회계자료는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sup>11)</sup> 그러므로, 환산이익을 이연시키는 것은 보수주의에 일치하지만, 이익이기 때문에 이연 시킨다는 것은 환율이 변동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더구나 환산손실은 인식하고 환산이익은 이연시키는 것은 내적 일관성이 없다.

이 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산이익의 실현여부를 결정할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환산이익에서 과거의 환산손실의 차액을 계산하고, 이 차액을 이연시키는 회계절차를 따랐는데, 그 이면에는 환산손익이 기간항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라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 2. 이연상각법 (deferral and amortization)

이연상각법은 환산손익을 이연 시킨 후, 이것을 관련된 재무상태 항목의 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는 것이다.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환율로 환산되기 때문에, 만일 현행외환율로 환산되었을 경우보다 낮은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친 이연된 환산손익의 상각액의 이익차감효과를 상쇄 또는

11) 송자 · 박준완 · 박찬정, 「국제회계」, 법경출판사, 1986, pp.194-198

차감한다. 대체방안으로 순부채상태의 환산손익을 외화부채의 장부가액 조정치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연된 금액은 환산손익을 이자비용 조정액으로 처리하여 장기부채의 잔존상환기간에 걸쳐 상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경영자들이 국내와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차입방안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할 때, 전형적으로 환율변동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환산손익이 이연되어 상각되는 그 기간동안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가 될 수 없다.

### 3. 무이연법 (no deferral = 당기손익처리법)

무이연법은 환산손익이 발생하는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이건 환산손익을 이연시키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한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이연기준들이 실무에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 접근방법에서는 환산손실일 경우에는 발생 즉시 인식하고 환산이익인 경우에는 실현되었을 경우에만 인식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산손익을 당기손이익에 포함시키면 환율이라는 확률요인을 이익에 도입한 결과가 되고, 환율이 변동할 때 마다 이익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된다.

또한, 가공의 환산손익을 이익에 포함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일관적인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정보를 항상 제공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 제 4 절 外貨換算會計와 관련한 先行研究 검토

외화환산회계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화환산의 회계처리방법 혹은 회계기준의 개선 혹은 개정방향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외화환산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대한 실증적 분석연구라고 할

수 있다.

손일태(1999)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해운사 중에서 약 2/3가량이 장기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으로 장기선물환, 통화스왑, 그리고 외화예금 혹은 자산부채관리기법 등을 사용하지만, 전체 장기부채에 대한 헤징비율은 평균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외항해운기업과 같이 장기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에 대한 헤징정책과 함께 장기외화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기업의 영업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김병호(2003)는 외항해운기업을 위한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에서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들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서와 같이 장기부채로부터의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추가하여 외항해운기업과 같이 장기외화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서는 주석에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환산손익을 기타 단기외화부채로부터의 손익과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대우 등(1997)에 의하면 제조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회계적 외환손익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환차손익과 외환환산손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밝혔다.

외환환산손익비율은 영업이익률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규모와 외화표시부채비율과는 음(-)의 관계임을 보고하고 또한 1990년대 들어 외환손익의 상대적 중요성은 높아졌으며,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환산손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인태(1998)에 의하면 1996년에 12월에 개정된 외화환산손익에 회계처리규정을 이용하여 당기비용화 및 자본조정으로 대체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당기보고 이익이 전기에 비하여 감소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이자비용이 경상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장기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환산 손실을 자본조정으로 기재함으로써 보고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기업의 이익조절의 가설은 이강일과 김천환(2000)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1996년 12월에 개정된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1996년의 12월에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장기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실을 원칙적으로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나 기업의 선택에 의해 자본조정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자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의 동기를 법인세 효과의 변수를 통해 설명을 하고자 함이다. 이강일 등의 연구(2000)에 의하면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실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보고이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기대비 현금흐름이 나빠진 기업은 손익 반영보다는 자본조정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았고, 전기대비 현금흐름이 좋아진 기업은 손익 반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영자들은 보고이익을 평준화(smoothing)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제 3 장 外貨換算 회계기준의 國際的 비교 및 分析

#### 제 1 절 외화환산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 1. 국제기준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국의 회계원칙이나 감사기준을 정리하여 그 차이를 적게 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의 설정, 즉 국제회계기준이 필요해 졌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 IAS)의 설정 기관으로 중요한 기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IASC)이다. 이 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의 직업회계사단체의 대표가 이 위원회의 합의서와 정관에 서명함으로써 1973년에 설립되었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 IAS)은 IASC가 기준이 되는 초안을 작성하면 이것을 공개초안으로서 공표하고 보통 6개월간의 공개기간을 가진 다음 확정한다.

IAS는 비록 법적 강제력은 가지지 않았으나 각국에 대하여 IAS의 조정에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이미 물가변동 및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29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Hyperinflation economy)에서의 재무보고시 물가변동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조정보가 아닌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FASB는 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89에서 물가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정보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AS)에 의하면 15항에는 “화폐성 항목의 정산시 발행하거나 보고기업의 화폐성 항목을 당해 기간동안 최초로 계상 또는 전기 재무제표에 보고된 것과 다른 환율로 보고 되는 환차는 17항 및 19항에서 다루고 있는 환차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의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항 : 보고기업의 외국실체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환차는 37항(해외 실체의 처분)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시점인 동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보고기업이 재무제표상 지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9항 : 보고기업의 외국실체에 대한 순 투자를 헷징할 목적으로 계상한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환차는 37항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시점인 동 투자액의 처분시점까지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상 지분으로 분류해야 한다.

21항 : 실무상 헷징수단이 없으며, 또는 외화로 거래된 최근의 자산취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미확정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심각한 가치하락으로부터 환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환차는 “조정 후 장부계상금액인 대체원가 또는 동 자산의 판매 혹은 사용시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관련자산의 장부계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국제회계기준상의 외화환산회계처리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장기 및 단기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당해기업의 대차대조표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손익을 계산해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비화폐성 외화항목 중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것은 거래일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기록된 것은 그 기록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투자의 처분시 까지는 지분으로 분류하고, 해외사업에 대한 순 투자의 헷지로 발생한 외화부채의 환산차액은 지분으로 분류하고 처분시에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2. 우리나라의 외화환산 회계기준

우리나라의 외화환산회계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 자체의 개정과 기업회계기

<sup>12)</sup> <http://www.samiltax.com/>, 기업회계 “국제회계기준”, 2000. 4

준을 존중한 법인세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봤을 때 급격한 환율변동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sup>13)</sup>

## 1) 기업회계기준의 변천 과정

### <1981년 12월 23일 개정전>

1981년에 최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외화평가이익과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이익과 외화평가손실은 임시거액인 경우에 한하여 외화평가이익은 임시부채로 외화평가손실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거액의 외화평가이익 및 외화평가손실이란 당기의 외화평가손익을 상계한 순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시거액의 외화평가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순액을 환율 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의 과목으로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에 계상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상각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단 계상된 환율조정차계정과 환율 조정대 계정을 서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1990년 3월 29일 개정 후>

1990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평가손실 및 외화평가이익이라는 용어 대신 외화환산손실 및 외화환산이익이라는 용어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간결화를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과 화폐성외화부채의 환산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되, 유예기간을 두어 199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환율조정차(대)의 계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다.

### <1996년 12월 27일 개정시>

<sup>13)</sup> 삼일인포마인, 「2001년 대비 법인조정계산서 작성실무」, 삼일인포마인, 2000, pp.53-55.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화폐성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순액으로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로 하여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차기 이후에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면 이와 상계처리하고 그 잔액은 관련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가 유동화 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1996년 12월 27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1997년 12월 24일 개정시>

장기화폐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관련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거나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로 이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1997년 12월 24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다. 이연처리의 취지는 환율의 급등과 관련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서 발행한 거액의 외화환산손익은 상환하거나 상환 받을 때에 실현되고 또한 금융비용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보유손익을 회계기간별로 안분하여 인식하기 위함이었다.

<1998년 12월 11일 개정시>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장, 단기 구분 없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계상되어 있던 환율조정차 및 환율조정대는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도록 한다.

2) 법인세법의 변천 과정

<199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중 장기외화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는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또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잔존 상환기간내에 균등하게 상각(환입)하고, 단기의 화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였다.

<1994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 38조의 2 (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에서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 및 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화채권은 대고객전신환 매입률, 외화채무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적용)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1995년 1월 1일 이후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 38조의 2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개정전에는 외화채권 및 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개정 전에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 또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였다. 이즈음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1995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 38조의 2 (대통령령 제16192호, 1996.12.31)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비용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시행 시기는 199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였다.

이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법인이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동 평가손익을 당해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31일까지>

1997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 38조의 2 (대통령령 제15564호, 1996.12.31)에서는 단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차손익은 종전과 같이 당기손익에 반영시키되,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잔존 년수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와 더불어 1997년 12월 24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상의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시행 시기는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였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며, 종전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채권, 채무의 회수기일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하였다.



## 제 2 절 外貨換算會計基準의 國際的 比較<sup>14)</sup>

### 1. 범위

#### 1) 일반사항

FASB Statement 52에서는 외화환산회계에서 기능통화 접근방법(functional currency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 기능통화란 정의된 용어로서 많은 다른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의 기능통화<sup>15)</sup>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주된 경제적 환경으로서의 통화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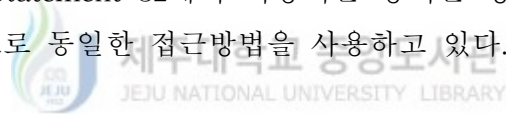
<sup>14)</sup>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sup>15)</sup>FAS 52에서 기능통화는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entity operates”로 정의되어 있다.

된다. 해외지점(foreign subsidiary)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능통화는 그 해외지점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 혹은 모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통화 즉 보고통화의 두 가지 중 한가지인데, 환산(translation)하는 절차는 기능통화가 외국통화인가 혹은 보고통화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IAS 21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IAS 21에서는 기능통화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다르게 정의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용어들 중의 하나가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인데, IAS 21에서의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역 통화(local currency)에 의하여 현금 및 다른 현금항목들을 축적하고,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창출하며, 채무도 차용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sup>16)</sup>

모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가 되는 해외사업장은 영업활동을 모기업의 영업의 연장인 것처럼 수행하는데, 이러한 해외사업장은 FASB Statement 52에서 기능통화가 모기업의 통화인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IAS 21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FASB Statement 52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상이할 지라도 외화환산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2) 미국기준에서의 기능 통화의 결정

미국기준에서의 기업의 기능 통화는 그 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주된 경제적 환경(primary economic environment)으로의 통화를 의미하는데, 기능 통화는 상황에 따라서 원화 또는 외화가 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것은 기업에 의해서 현금이 창출되고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제적 환경을 나타내는 통화이다. 기업의 기능통화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관한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기능통화를 확인시켜주며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기능통화를 확인하도록 결정하는 임의적인 원칙이 어느 정도의 피상적인 통일성을 가져다 줄 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정보에 대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기업의 경영진은 각 영업활동에 대한 기능통화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사실들을 획득하고, 이에 대

<sup>16)</sup> IAS 21에서 해외사업체를 “one that accumulates cash and other monetary items, incurs expenses, generates income and perhaps arranges borrowings, all substantially in its local currency”로 정의되고 있다.



한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만약 사실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의 판단이 가장 기본적이며 최우선적이다.

다음의 명확한 경제적 요소들은 다른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기능통화를 결정하는데 개별적이고 집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1) 현금흐름 지표

외국 통화는 해외사업장의 개별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주로 외환에 의하여 발생하며 모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기업 통화는 해외사업장의 개별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 즉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 모기업으로의 송금에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판매가격 지표

외국 통화는 해외사업장의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주로 단기 기준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해외 영업지역의 경쟁과 그 지역의 정부 규정에 의하여 더 많이 결정되며, 모기업 통화는 해외 사업장의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주로 단기 기준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이 전 세계적인 경쟁 혹은 국제적인 가격에 의하여 더 많이 결정된다.

#### (3) 판매시장 지표

외국 통화는 비록 수출이 많더라도, 해외 사업장의 제품에 대한 활발한 해외지역 판매시장이 존재하나, 모기업 통화의 경우 판매시장은 주로 모기업이 속한 국가이거나 혹은 판매계약이 모기업 통화에 의하여 표시된다.

#### (4) 비용 지표

외국통화의 경우 비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있을지라도, 해외사업장의 제품에 대한 노무원가, 재료원가, 기타 원가들이 주로 해당지역의 원가들인데 반해, 모기업 통화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노무원가, 재료원가 그리고, 다른 원가들은 계속적으로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로부터 획득된 생산요소들의 원가이다.

#### (5) 자본조달 지표

외국 통화는 자본조달이 주로 해외통화에 의하여 표시되며, 해외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이 현재 지니고 있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채무의 이자 상황에 대하여 충분하나, 모기업 통화의 경우 자본조달이 주로 모기업 혹은 다른 원화표시 채무에 의하거나, 혹은 해외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자금이 모기업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와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채무의 이자 상황에 충분하지 않다. 기업확장을 위한 모기업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은 만약 해외사업장의 확장된 영업으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 그러한 추가적인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황에 충분하다면 결정요소가 되지 못한다.

#### (6) 기업 상호간의 거래 및 협정지표

외국 통화는 해외사업장과 모기업 상호간의 거래 규모가 작고, 광범위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사업장의 영업활동이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이 모기업 혹은 관계회사의 경쟁적인 이점에 의존할 수는 있다. 모기업 통화의 경우는 해외사업장과 모기업 상호간의 거래규모가 매우 크며, 광범위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만약 해외사업장이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에 즉각 이전될 수 있는 투자, 채무, 그리고 무형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명목상의 혹은 꺾이기만 존재하는 회사라면, 모기업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기능통화이다.

해외사업장은 두 개 이상의 지역적인 혹은 분리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지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해외영업활동은 모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영업활동이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각기 다른 기능통화를 지닐 수 있는데, 각 사업장은 대체적으로 여러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각각의 영업활동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이며, 사실과 환경에 기초하여, 각각의 영업활동이 다른 기능통화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결대상이 되든지 혹은 지분법에 의하여 계상되는 해외투자는 모기업에 의하여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모기업의 중대한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

유사하게 모기업의 통화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측정, 검토, 평가, 그리고 추정 등을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 그러한 경영통제, 의사결정 그리고 관련된 행동이 경제적 사실과 환경들을 반영하

고, 나타내고, 혹은 생성시킨다. 그러나 중요한 경영통제의 행사와 의사결정 목적을 위하여 모기업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기업의 통화가 해외 영업점에 대한 기능통화라는 것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이 되면, 경제적 사실과 환경의 변화가 명확하게 기능통화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기능통화에 대한 결정은 각각의 해외영업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기능통화가 외국통화로부터 보고통화로 변경이 되면, 과거 기간동안의 외화환산조정은 지분으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전기말의 비화폐성 자산에 대하여 환산된 금액이 기능통화가 보고통화로 변경된 회계연도와 차기 회계연도에서의 그러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장부가액이 된다.

또한,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에서 외국통화로 변경이 되면, 변경시점에서 비화폐성 자산을 현행 환율에 따라서 환산한 결과로 발생한 환산조정금액은 자본항목에서 해외사업 환산차 혹은 해외사업 환산대 항목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

### 3) 한국기준에서의 기능통화의 결정

한국기준에서는 기능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기업회계기준 제 69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준칙(2000년 3월 22일 전문개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 (2) 회계정책의 적용 등

가. 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경우 당해 국가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

표 환산은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외중속회사의 결산일이 지배회사의 결산일과 다른 경우 해외중속회사의 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결산일의 환율 및 지배회사의 회계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4) 국제기준에서의 기능통화의 결정

국제기준에서도 기능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기준과 동일한 정의로 사용되는데, 다음은 해외영업점이 모기업의 영업활동에 한 부분이 되는 해외영업점이 아니고 해외사업체로 분류하는 지표들을 설명하고 있다.

- (1) 모기업이 해외영업점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해외영업점의 활동이 모기업의 활동과는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경우.
- (2) 모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
- (3)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모기업의 자금조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자신의 영업활동으로부터 혹은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내에서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4) 해외사업장의 제품 혹은 용역에 대한 노무원가, 재료 및 기타 부품원가가 보고통화가 아니고 해외사업장이 속한 국가의 통화로 지급되거나 정산되는 경우.
- (5) 해외사업장의 매출이 주로 보고통화 이외의 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6) 모기업의 현금흐름이 해외사업장의 일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각 해외사업장을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열거된 항목들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이 해외사업체인가 혹은 모기업의 영업활동의 한 부분이 되는 사업장인가를 구분하기가 힘들며,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3-1>은 한국기준, 미국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에서의 기능통화 결정기준을 요약 비교하였다.

<표 3-1> 기능통화의 결정방법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sup>17)</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관련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언급하여야 하지만, 준칙에서는 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은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li> <li>- 기능통화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단지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 기능통화가 외국통화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li> <li>- 위 이외의 경우에는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것으로 간주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연결부분을 언급하고 있음.</li> <li>- 기능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함.</li> <li>- foreign entity (해외사업체)가 기능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임. 이 경우에 해당되는 6가지 지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li> <li>- 기능통화의 변경을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간주하고 소급법을 적용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연결부분을 언급하고 있음.</li> <li>- 기능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경우와 기능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의 구분을 (가)현금흐름지표, (나) 판매가격지표, (다) 판매시장지표, (라) 비용지표, (마) 자본조달지표, (바) 기업상호간의 거래 및 협정의 지표 등을 판단하여 결정함.</li> <li>- 국제기준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한 개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기능통화를 갖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li> </ul> |

## 2) 헷징회계

IAS 21에서는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에 대한 순투자의 헷징으로서 설정된 외화 유동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exchange difference)의 분류 이외

17)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의 외화 항목들에 대한 헷징회계는 다루지 않고 있다.

헷징회계의 다른 분야들은 IAS 39에서 다루고 있으며, FASB Statement 52에서도 헷징회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화 선도 계약과 통화스왑(currency swap)에 대한 회계와 외화 확정계약(foreign currency firm commitment)과 순투자의 헷징회계에 대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에서 파생상품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해석 10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사항에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동 해석 11의 통화선도거래에 대한 고려사항에서 통화선도거래의 평가와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 위험회피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표 3-2> 각 기준서에 포함된 헷징회계의 내용<sup>18)</sup>

| 한국기준  | 미국기준  | 국제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회계기준본문에서는 헷징과 관련된 외화환산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li> <li>- 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의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통화선도계약, 외화약정계약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SB 52에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 외화확정계약, 그리고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헷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li> <li>-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헷징규정에서 국제기준에 추가하여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있음. 이 두 가지 조건은 헷징거래는 반드시 순투자에 대한 경제적 헷징으로서 설정되어야하고 또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 21에서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헷징에 대하여 규정.</li> <li>- 그 이외의 헷징관련 회계는 IAS 39에서 규정하고 있음.</li> </ul> |

18)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우리나라의 외화환산 기준서에 헷징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 인가는 다른 해당 기준서에서의 포함 범위와 관련성이 있다.

국제기준의 경우 해외 사업체 순투자에 대한 헷징만 IAS 21에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헷징관련 규정들은 IAS 39, 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서 다루고 있다.

FASB Statement 52에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 외화확정계약, 그리고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헷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사업체의 순투자에 대한 헷징규정에서 국제기준에 추가하여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헷징거래는 반드시 순투자에 대한 경제적 헷징으로서 설정되어야 하고 또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국기준에서는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의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의 헷징에 대하여서는 미국기준에서 언급한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기준에서의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하다.

즉,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의 헷징으로 간주되는 외화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순투자를 처분할 때까지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시에 당기손익항목에 포함된다.


## 2. 관련 용어의 정의

기능통화라는 용어와 관련된 정의에 대한 차이는 앞에서 논의하였다. 그 이외의 정의들 중에서 유일한 증대 차이는 FASB Statement 52에서는 IAS 21에서 보다는 더욱 더 많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기준은 조문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기준과 미국 및 국제기준과의 용어에서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한국기준에서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구분하는데 반하여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는 exchange difference로 미국기준에서는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gain or loss 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표 3-3> 각국기준에서의 외환차이(exchange difference)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손익에 대한 용어의 비교<sup>19)</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외환차손익              | exchange difference            |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gain or loss |
| 외화환산손익             | exchange difference            |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 or loss |
| 해외사업환산차 혹은 해외사업환산대 | cumulative exchange difference | cumulative translation adjustment         |

1) 미국기준에서의 용어 정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거래 날짜 (Transaction Dat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거래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혹은 매입)의 날짜이며, 장기 확정계약 (commitment)거래는 한 개 이상의 거래일을 가질 수 있다.

(2) 거래이득 혹은 손실 (Transaction Gains and Losses)

기능통화와 외화거래가 표시된 통화간의 환율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이득 혹은 손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외국통화 거래의 청산으로부터 실현되는 실제 기능통화 현금흐름과 지급이 되지 않은 외국통화 거래에 대한 예상 기능통화 현금흐름을 증가시키든지 혹은 감소시킨다.

(3) 기능통화 (Functional Currency)

<sup>19)</sup>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사업체의 기능통화는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경제적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지급하는 통화환경을 의미한다.

(4) 모기업 (Reporting Enterprise)

재무제표가 언급되는 사업체 혹은 group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연결, 결합 혹은 지분법 회계에 의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외국통화거래, 혹은 이들 둘 다를 반영한다.

(5) 보고통화 (Reporting Currency)

기업이 재무제표를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통화

(6) 선도 할인 혹은 할증 (Forward Discount or Premium)

계약된 선도환율과 계약 시작일의 현물환율의 차이를 계약된 외국통화단위에 곱한 금액

(7) 외국통화 (Foreign Currency)

언급이 되는 사업체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서 원화가 해외사업체에 대해서는 외국 통화일 수 있다.

(8) 외국통화거래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사업체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계약내용이 표시된 거래를 말한다. 통화거래는 기업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의 상품이나 용역을 신용으로 매입 혹은 매도할 경우, 기업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할 경우, 기업이 수행되지 않은 통화선도거래의 당사자인 경우, 혹은 그 이외의 많은 경우로,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구입 혹은 처분하거나, 외화 표시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갚을 경우가 있다.

(9) 외국통화 재무제표 (Foreign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

기업의 보고통화가 아닌 기능통화를 측정의 단위로 사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10) 외국통화 환산(Translation)

다른 통화로 표시되거나 측정된 금액을 기업의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과정

(11) 전환 (Conversion)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것

(12) 지역통화 (Local Currency)

언급되는 특정 국가의 통화

(13) 통화선도계약 (Currency Forward Contract)

특정 선도환율로 특정 미래의 날짜에 다른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

(14) 통화 스왑 (Currency Swaps)

다른 국가에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두 기업이 미래의 특정 날짜에 동일한 환율로 두 통화를 재 교환 하자는 계약에 따른 통화의 교환

(15) 현행 환율 (Current Exchange Rate)

현행 환율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마지막 날의 환율 혹은 수익, 비용, 이득 그리고 손실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의미하며, 재무제표의 환산을 위한 현행 환율의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FASB Statement 52의 문단 12에 제시되어 있다.

(16)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

재무제표가 모기업의 보고통화와 다른 통화에 의하여 작성되고, 모기업의 재무제표에 연결, 결합 혹은 지분법에 기초하여 회계 처리되는 사업체 (예를 들어서 지사, 부분, branch, joint venture 등)

(17) 현물환율(Spot Rate)

교환되는 통화의 즉각적인 인도에 적용되는 환율

## 2) 국제기준에서의 용어 정의

### (1) 공정가치 (Fair Value)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내부자 거래에 의하지 않고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2) 마감환율 (Closing Rate)

대차대조표일의 현물환율(spot rate)을 의미한다.

### (3) 보고통화 (Reporting Currency Unit)

재무제표가 작성되는데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 (4) 외국통화 (Foreign Currency)

기업의 보고통화 이외의 통화를 의미한다.

### (5) 외환차이 (Exchange Difference)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단위의 외화를 서로 다른 환율의 보고통화로 환산할 때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에는 외환차 손익과 외화환산 손익이 있는데, 외환차 손익은 외화 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 이고 외화 환산손익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이다.

### (6) 해외사업장 (Foreign Operation)

해외지점, 합작투자회사, 해외사업소 등이 포함되며 (subsidiary, associate, joint venture or branch of the reporting enterprise), 그 활동이 모기업이외의 국가 내에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행된다.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는 해외사업장 중에서 본점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 (7)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 (Net Investment in Foreign Entity)

해외사업체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을 의미한다.

(8) 환율 (Exchange Rate)

두 국가에서의 통화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9) 화폐성 항목 (Monetary Items)

보유하고 있는 화폐와 고정된 혹은 결정된 화폐금액으로 수취되든지 혹은 지불되는 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 3. 외화환산에서의 인식과 측정

#### 1) 환율

IAS 21에서의 환율에 대한 지침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감환율(closing rate)을 “the spot exchange rate at the balance sheet date”로 정의하였고, 현물환율(spot rate)은 the exchange rate at the date of transaction (거래발생일 현재의 환율)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거래시점에서의 실제 환율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치로서 평균환율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FASB Statement 52에서는 환율에 대하여 더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현물환율(spot rate)은 “the exchange rate for immediate delivery of currencies exchanged” (교환되는 통화의 즉각적인 인도에 적용되는 환율)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일시적으로 결여되는 상황과 통화의 교환가능성의 결여가 일시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Statement 52에서의 평균환율의 사용은 IAS 21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환율은 외화 거래와 외화 재무제표를 측정하는 절차 중에서 총체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적절한 환율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 3-4> 각 기준에서의 환율에 대한 정의 비교<sup>20)</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규정함.</li> <li>- spot rate에 대한 정의 없음.</li> <li>- 평균 환율 사용 가능함.</li> <li>- 여기에서의 평균 환율은 기초환율과 매월 말 환율 합계액의 평균 환율과 비용과 수익 각각의 가중평균환율, 그리고 매월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osing rate 과 spot rate에 대하여 정의함.</li> <li>- closing rate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spot rate으로 정의함.</li> <li>- spot rate은 거래발생일 현재의 환율로 정의함.</li> <li>- 평균환율 사용 가능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ot rate에 대하여 국제기준보다 더 자세하게 정의 (교환되는 통화의 즉각적인 인도에 적용되는 환율)</li> <li>-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일시적으로 결여되는 상황에 대한 규정 있음.</li> <li>- 평균환율 사용가능함.</li> <li>- 계약체결환율, 배당금지급환율, 혹은 preference, penalty rate 등) 상황을 제시하고, 외화거래와 외화재무제표를 환산하는데 어떤 환율이 사용되는지를 명시함.</li> </ul> |

2) 해외사업체 순투자에 대한 헷징

IAS 21에서는 기준에 설정된 상황에서의 헷징회계를 설명하고 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부채는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의 헷징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ASB Statement 52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IAS 21에서는 없는 헷징회계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헷징거래는 반드시 순투자에 대한 경제적 헷징으로서 설정되어야하고 또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헷징회계가 시작되는 날짜의 설정은 중요하다. 사건 이후의 설정은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기말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헷징의 효율성은 부채(헷징하는 항목)가 순투자(헷징되는 항목)에서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설정되는 경우에 중요하게 된다.

20)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표 3-5> 순투자의 헷징에 관련된 각 기준에서의 관련 규정 비교<sup>21)</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투자에 대한 헷징관련 규정은 해석에서 다름.</li> <li>- 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의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 21에 해외순투자에 대한 헷징 관련 규정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SB Statement 52에서는 해외 순투자에 대한 헷징관련 규정 있음.</li> <li>- FASB Statement 52에서는 IAS 21에서는 없는 헷징회계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설정.</li> </ul> |

3) 보고통화의 가치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 시키는 회계처리

IAS 21에서는 기업의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가 심각한 평가절하(devaluation) 혹은 가치하락(deprecia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통화로 취득한(invoiced) 자산을 최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부채에 대한 외환손실에 관하여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기준방법은 그러한 외환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FASB Statement 52에서도 국제기준에서와 같이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IAS 21에서 허용되는 대체방법으로 만약 관련된 부채가 지불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헷징의 방법이 없었던 경우에는 외환손실을 자산의 원가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율통제의 결과에 의하여 외화 취득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체방법은 FASB Statement 52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미국의 기업들에게서는 이러한 대체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SIC 해석 11의 외환 - 심각한 환율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회계처리(SIC Interpretation, Foreign Exchange-Capitalization of Losses Resulting from Severe Currency Devaluations)에서

<sup>21)</sup>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는 이러한 대체적 방법이 사용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위 방법이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채무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외화가 모기업에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외환위험을 헷징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하여 강제로 외화거래가 통제되어 외화가 부족하고 또한 이에 대한 헷징 수단이 없는 경우이다.

추가로 유럽의 경제 및 통화연합(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가입한 통화에 의하여 표시된 외화환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SIC 7에서 관련된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 3-6>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의 환율하락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각 기준에서의 회계처리 비교<sup>22)</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적 처리는 발생하는 손실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li> <li>- 대체적 처리는 발생하는 손실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킴으로서 자본화시킴(capitalization).</li> <li>- 자본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li> <li>- 그 두 가지 조건은 외국통화가 모기업에 이용가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관련 부채가 결제될 수 없었고), 외환위험에 대한 헷징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함.</li> <li>- 유럽의 경제 및 통화연합에 가입한 통화에 대하여서는 대체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준에서의 표준적 처리와 같이 손실로 인식함.</li> <li>- 국제기준에서의 대체적 처리방법은 인정하지 않음.</li> </ul> |

<sup>22)</sup>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편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 4) 해외사업장(foreign operation)에 대한 기능통화의 결정

IAS 21에서는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4개의 짧은 문단 (문단 23-26)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서 FASB Statement 52에서는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단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문단 42는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두 고려해야만 하는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기능통화의 결정은 어려운 실행상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5) 모기업 영업활동의 한 부분인 해외사업장

모기업의 영업활동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는 피연결기업(consolidated enterprise)에서의 보고통화이다.

IAS 21에서는 연결된 기업의 보고통화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인 경우에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재 측정(remeasure)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재 측정(remeasurement) 절차는 만약 해외영업에 대한 장부기록이 기능통화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얻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도록 의도된 것이다.

IAS 21에서 재고자산, 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과 감가상각은 역사적 환율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Statement 52에서는 역사적 환율의 사용이 요구되어지는 자산, 부채, 지분, 수익, 비용에 대한 더 많은 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예들은 어떤 항목이 역사적 환율로 환산되고 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IAS 21의 문단 28에서의 일부분은 보고통화(reporting)가 기능통화일 때 해외 재고자산에 대하여 원가와 시가중 저가를 사용하는 원칙을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환율의 변화와 외화대체원가 혹은 외화판매가격의 변화의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주제이다.

Statement 52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의 적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기준과 미국기준에서 모기업의 영업활동의 한 부분인 해외 영업점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23)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 (1) 국제기준에서의 회계처리

모기업의 영업활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는 해외 사업장의 거래가 모기업의 거래인 것처럼 간주하여 문단 8에서 22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사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의 개별 항목들은 모든 거래가 마치 모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과 같이 환산된다.

고정자산의 원가와 감가상각비는 그 자산의 매입시점에서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며, 만약 그 자산이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면, 평가시점에서의 환율을 사용하며, 재고자산의 원가는 원가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고, 자산의 현재가치는 실현가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 가치가 외화로 결정된 경우 그 가치는 그러한 순실현 가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의 환율을 사용해서 환산한다. 따라서 사용되는 환율은 마감환율(closing rate)이다.

비록 해외사업장에서의 재무제표에서는 그러한 조정이 필요 없을 지라도, 모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의 장부가치를 현재가치 (혹은 순실현가치)로 감소시키기 위한 조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의 조정이 모기업의 재무제표에서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실제 적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 당일의 실제 환율을 사용하지 않고 추정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간 평균 환율 혹은 월간 평균 환율 등이 각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 (2) 미국기준에서의 회계처리

만약 해외사업장의 장부기록이 그 사업장의 기능통화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환산절차(translation process)를 수행하기 이전에 기능통화로의 재측정(remeasurement)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경우에는 보고통화로의 재측정을 하게 되면 환산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재측정 과정은 해외사업장의 기록이 최초부터 기능통화로 기록되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위하여,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간에 특정 계정의 재측정 절차에서 역사적 환율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능통화로 표시되지 않은 화폐성자산과 부채의 재측정으로 부터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달러화가 기능통화인 경우 달러화에 의하여 표시되지 않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들 수 있다.)

기능통화로 기록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재측정을 위해서는 저가주의(lower of cost or market)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쓴다. 기능통화로 장부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 저가원칙은 특별한 적용을 요구하는데, 다른 통화에 의하여 장부상에서 저가로 기록되는 재고자산은 먼저 역사적 환율을 사용해서 기능통화에 의하여 원가를 재 측정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기능통화에 의한 역사적원가가 기능통화에 의하여 표시된 시장가격과 비교된다.

기능통화에서 규칙의 적용은 외국통화에 의한 장부기록에는 감액의 발생하지 않았을 지라도 기능통화에 의한 재무제표에서는 시장가격으로의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외국통화 장부기록에서는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어도 기능통화에 따른 경우에 시장가치가 역사적원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만약 재고자산이 기능통화를 사용한 재무제표에서 시장가격으로 감액되었다면, 이러한 기능통화 금액은 기능통화 재무제표에서 그 재고자산이 매각되든지 혹은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한 경우까지는 장부가액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저가주의를 적용시키는 경우에 장부기록을 하는 외국통화가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재고자산이 취득된 날부터 대차대조표일 까지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그러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기능통화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감액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장부기록이 되고 있는 통화로 표시되는 대체원가 혹은 판매가격이 충분히 증가되어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된 역사적 원가를 시장가격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감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표 3-7> 모기업 營業活動의 한 部分인 해외사업장의 會計處理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sup>24)</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 없음.</li> <li>- 따라서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화폐성.비화폐성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자산과 부채는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 21에서는 재고 자산,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과 감가상각은 역사적 환율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음.</li> <li>- 보고통화(reporting)가 기능통화일 때 해외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를 사용하는 원칙을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ement 52에서는 역사적 환율의 사용이 요구되는 자산, 부채, 지분, 수익, 그리고 비용에 대하여 국제기준보다 더 많은 예를 제공하고 있음.</li> <li>- Statement 52에서는 저가기준에 대한 요구사항들의 적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li> </ul> |

기본적으로 국제기준과 미국기준에서의 처리방법은 동일하며 단지 미국기준에서 역사적 환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6) 기업결합에서의 적용환율

IAS 21과 Statement 52 모두에서 외국통화가 기능통화인 경우에는 현행 환율(current exchange rate)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환산하는데, 외국통화가 기능통화인 경우에 Statement 52에서는 기업결합에서 매수법회계(purchase accounting)로부터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의 조정을 환산하는데 현행 환

<sup>24)</sup>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율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AS 21에서는 현행 환율 혹은 역사적 환율 중에서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환율을 사용하느냐 혹은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업권,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 그리고 관련 상각 및 다른 비용의 환산 결과가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표 3-8> 기업결합에서 매수법회계(purchase accounting)로부터 발생 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을 환산하는 경우, 현행환율의 사용에 대한각기준의비교<sup>25)</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 규정 없음. | - 매수법회계(purchase accounting)로부터 발생 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을 환산하는데 현행 환율 혹은 역사적 환율 중에서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 - 매수법회계(purchase accounting)로부터 발생 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을 환산하는데 현행 환율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음. |

#### 7) 대차대조표일 이후 환율변동에 대한 조정

IAS 21과 Statement 52에서는 모두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의 대차대조표일이 비록 연결재무제표작성일과 다를 지라도 그 날짜에서의 현행 환율을 환산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표 3-9>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환율변동 조정에 대한 각 기준에서의 회계처리비교<sup>26)</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종속회사의 결산일이 연결재무제표작성 기준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li> <li>- 그러나 종속회사의 결산일과 연결재무제표작성기준일과의 차이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의 대차대조표일이 비록 연결재무제표작성일과 다를 지라도 해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일의 현행 환율을 환산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일까지 환율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의 대차대조표일이 비록 연결재무제표작성일과 달라도 해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일의 현행 환율을 환산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li> <li>-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일까지 환율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li> </ul> |

IAS 21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일 까지 환율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Statement 52에서는 이러한 조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대한 변동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Statement 52의 공시내용은 IAS 21에서의 공시내용과 차이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환율의 변동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의 변동을 조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 8) 높은 인플레이션(high inflation)하에서 외화로 보고 되는 해외사업체의 재무제표 환산

IAS 21에서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 하에서의 외화로 보고 되는 해외

<sup>26)</sup>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사업체(foreign entity)의 재무제표는 IAS 29에 따라서 보고통화로 환산하기 이전에 재 작성된다. IAS 29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든지 혹은 현재원가(current cost)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관계없이, 각 재무제표의 항목들은 대차대조표일의 현재의 가치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atement 52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경제하에서의 해외사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는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것처럼 재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경제하에 해외영업(foreign operation)을 하는 기업에 IAS 21을 적용시키는가와 Statement 52를 적용시키는가에 따라 많은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표 3-10>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의 외화로 보고 되는 해외사업체 (foreign entity)의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sup>27)</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회계규정 별도로 없음.</li> <li>- 그 이외의 중속회사가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하에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 하에서의 외화로 보고되는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의 재무제표는 보고통화로 환산하기 이전에 재작성된다.</li> <li>-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역사적원가 (historical cost)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든지 혹은 현재원가 (current cost)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관계없이, 각 재무제표의 항목들은 대차대조표일의 현재의 가치에 기초하여 작성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하에서의 해외사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는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것처럼 재 측정하여야 함.</li> <li>- 인플레이션 회계 규정 별도로 없음.</li> </ul> |

27)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IAS 29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 회계기준서를 따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기준이 없는 실정인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서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를 환산할 경우 인플레이션 회계규정이 있으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IAS 29의 내용은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대차대조표 항목들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행가치로 표시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인플레이션 회계기준을 규정하는가와 연결이 된다.

미국기준에서는 국제기준에서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경제하에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시 기능통화가 마치 보고통화인 것처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국제기준에서와 같이 인플레이션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난 이후에 외화환산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기준에서와 같이 기능통화가 원화인 것처럼 간주하고 환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시 미국기준에서와 같이 기능통화를 우리나라 통화인 것처럼 작성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 9)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의 처분(disposal)

IAS 21과 Statement 52에서 모두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와 관련된 지분으로 분류가 된 누적된 외화환산손익(cumulative exchange differences)은 해외사업체의 처분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atement 52에서는“처분”을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매각 혹은 청산으로 설명하고 있다. Statement 52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청산이어야 한다.

<표 3-11> 해외사업체의 처분에 대한 기준의 비교<sup>28)</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와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사업소 또는 지분법적용대상 회사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와 관련된 지분으로 분류가 된 누적외환차이(cumulative exchange differences)는 해외사업체 처분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규정함.</li> <li>- IAS 21에서는 “처분”에 투자에 대한 회수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떠한 배당도 포함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체(foreign entity)와 관련된 지분으로 분류가 된 누적된 외화환산조정(cumulative translation adjustment)은 해외사업체의 처분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규정함.</li> <li>- Statement 52에서는 처분을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매각 혹은 청산으로 설명되어 있음.</li> <li>- Statement 52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청산이어야 한다.</li> </ul> |

10) 공시

IAS 21에서는 연결되는 기업의 보고통화(연결된 기업의 재무제표에 사용된 통화)가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와 다른 경우 혹은 보고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는 Statement 52에서는 보고통화의 선택이 Statement 52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해외사업장(foreign operation)의 기능통화에 변경이 있는 경우 IAS 21에서는 그 내용이 변경이 보고 되는 최초 기간에 발생하였다면 각 보고 되는 기간의 순손익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포함하여 특별한 공시(special disclosure)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준에서 회계원칙이 변경되었을 때 실행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APB Opinion 20, Accounting Changes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것과 명백하게 그 실체에 있어서 상이한 거래 혹은 사상(transactions or events)에 의해 이

28)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루어진 회계원칙의 채택이나 변경은 회계원칙의 변경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Statement 52에서는 회계목적으로 기능통화의 변경은 단지 기능통화가 변경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제적 사실과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AS 21의 과거 기간동안에 대한 소급공시 요구사항 (pro forma disclosure)은 APB Opinion 20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기준에서는 기능통화의 변경이 회계원칙의 변경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만약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간주한다면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잉여금에 반영을 하고,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하여 과거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각 연도별로 계산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 경상이익, 주당 순이익 및 중요하게 변동한 항목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2> 공시에 대한 각 기준의 비교<sup>29)</sup>

| 한국기준   | 국제기준  | 미국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음.</li> <li>- 만약 기능통화의 변경을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간주하면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하고, 기능통화가 과거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 3년간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통화의 변경시에 그러한 변경이 보고되는 최초 기간에 발생하였다면 각 보고되는 기간의 순손익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포함하여 특별한 공시(special disclosure)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li> <li>- 따라서 국제기준에서는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통화의 변경은 회계목적으로 단지 기능통화가 변경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제적 사실과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원칙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li> <li>- 따라서 기능통화가 변경된 기간부터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결과를 보고함으로 전진법을 채택함.</li> </ul> |

<sup>29)</sup> IAS 21 문단 44-48, 그리고 FAS 52 문단 30-32 참조

각국의 외화환산방법 및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3> 각국의 외화환산회계처리의 비교

| 구 분   | 국제회계기준  | 미 국 기 준  | 우리나라 기준   |
|---|---|--|---|
| 외환거래<br>환산방법                                  | 거래일환율 또는<br>실제환율에 근거한<br>환율로 적용                             | 외화거래가 그 거래<br>일에 결제된다고 하<br>면 적용될 것으로 추<br>측되는 환율을 적용  | 거래일환율 또는<br>실제환율에 근거한<br>환율로 적용                             |
| 결산기말의<br>환산방법<br>1)외국통화<br>2)외화거래의<br>금전채무·채권 | 결산일의 환율을<br>이용해서 보고<br>장·단기 구별 없<br>이 모두 결산일 환<br>율을 이용해 보고 | 결산일 환율로 고쳐<br>서 환산<br>장·단기 구별 없이<br>모두 결산일 환율로<br>환산   | 결산일의 환율을<br>이용해서 보고<br>장·단기 구별 없<br>이 모두 결산일 환<br>율을 이용해 보고 |
| 환산차액<br>의 처리                                  | 환산차액은 원칙적<br>으로 당해연도 손<br>익에 포함                             | 환산차액은 원칙적으<br>로 환율이 변동할 때<br>의 손익에 포함. 외<br>화거래의 결제에 의<br>해 실현한 해당거래<br>에 결제된 기간의 손<br>익에 포함 | 환산차액은 원칙적<br>으로 당해연도 손<br>익에 포함.                            |

위의 <표3-1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외화환산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개정되었다.

### 제 3 절 外貨換算 會計基準의 比較要約

기업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외화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외화를 직접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든지 혹은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하여서는 거래를 기업이 보고하는 통화에 의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해외영업활동에 대한 재무제표를 기업이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들은 경영상의 혹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데, 환율의 변동이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조정은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환율의 변동이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조정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환율의 변동이, 본점 영업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self-contained and integrated) 운영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그러한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해외사업장을 모기업(reporting entity)과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외화환산에 따른 조정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이 모기업의 국내영업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개별자산 및 부채와 관련되어 있으며, 모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사업장에서의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실제적으로 외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에 대한 효율적인 헷징으로 간주되는 계약 및 거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헷징으로 회계처리 된다.

해외사업장은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모기업 영업활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해외사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해외사업장으로 해외사업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모기업 영업활동의 한 부분이 되는 해외사업장은 모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의 연장인 것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해외 사업장에는 모기업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단지 판매만 하고, 그 대금을 모기업에 전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 보고통화와 해외사업장이 속한 국가의 통화간의 환율변동은 모기업의 영업활

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대한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은 모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별 화폐성 항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사업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통화단위로 현금과 기타 화폐성 항목 등을 축적하고,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창출하며, 또한 대출을 받는다. 해외사업체는 또한 모기업의 통화를 통한 거래를 포함하여, 외국 통화들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다.

보고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환율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외사업체와 모기업 모두에 대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재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율 변동은 해외사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순 투자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해외사업체에 의하여 보유된 화폐성 그리고 비화폐성 항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환율을 사용해야하고, 또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시키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하여 대체적인 회계방법의 선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국제기준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기준 작성을 목적으로 많은 경우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준은 대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비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경제적 상황하에서의 처리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자본주의의 체계가 매우 발전된 단계의 국가이며, 이에 따라서 기업들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복잡한 상황하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서는 비용 효익의 측면으로 분석되어야 한다.<sup>30)</sup> 물론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한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30) 김병호, 안영권 “외화환산 토론회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 제 4 장 우리나라 외화환산회계처리 및 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 1 절 우리나라 외화환산 회계처리의 문제점

앞에서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현행 기업회계 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외화환산 방법인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기준 및 국제기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화환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회계처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회계기준의 환율규정의 불명확화로 인한 문제점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지점과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경우, 회계담당자의 임의대로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해외사업장의 환산방법의 유용성이 높지 않다. 또한,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적용환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적절한 환율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

특히 해외중속법인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대해서는 제103조의 2 제2항이 유일한 규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다는 점이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임금,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와 글로벌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기지뿐만 아니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투자가 및 해외자본시장의 요구로 해외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환산문제가 크게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규정되어 온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정치적 상황과 기업들의 로비 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외화환산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개정이 1990년 이후 5차례 이상 이루어졌다.

이는 회계정보기준의 비교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려면, 동일한 회계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의 매 산업년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 기간별 비교가능성 또는 계속성이 요구된다.

## 3. 미실현 손익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

현재 시행중인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은 일괄적으로 장 · 단기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차이를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현되지 않은 환산차이를 당기의 손익이 반영함으로써 과생되는 문제점이다. 실제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때에 실현된다.

회수 및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의 단기외화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환산차이는 환율이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존재하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는 상환기일이 워낙 길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기가 힘들거니와 대부분의 장기성 외화자산 및 부채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환산차이도 상당히 크게 발생되

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손익이 계상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 4. 재무제표의 환산과 관련된 공시에 대한 규정의 미비

해외지점 등의 환산방법과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는 것 외에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과 관련된 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제 2 절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의 개선방안

### 1.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포괄적이고 명확화를 통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은 논리적 타당성 보다는 실무상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다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추든지 또는 지금까지의 회계기준을 이용하면 회계정보가 왜곡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의 잦은 변경을 줄이려면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포괄적이고 명확해야 하겠다.

첫째로, 외화환산방법 및 환산손익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방안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처럼 다양한 방법론 및 회계처리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포함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의 평가방법이 있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도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 비례법처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에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정해놓고 기업이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외화환산방법도 화폐성-비화폐성법 한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환산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달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면 잦은 회계기준의 변경을 피할 수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환산회계처리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특히, 외화환산 시 적용하는 환율에 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적정환율”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화채권을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을 적용하든지, 외화채무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자산과 부채의 구분 없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겠다.

## 2.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차이의 자본조정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차입을 통하여 고정자산을 구매하고, 저리의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경영을 하였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거액의 환차손을 당기에 인식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는 왜곡될 여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차이를 단기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환산차이와 다르게 이연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기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회수시점이나 상환시점에서 회계처리 하거나 이연처리 하는 등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장기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인 미실현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모순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을 중용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환차손익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사항들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 제 3 절 기업의 외화환산과 관련된 환차손 상쇄 방안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많은 부문에 걸쳐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실현 손익인 외화환산손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외화거래의 환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외화환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쇄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환차손 상쇄를 위한 선물환 헷지

기업이 외화채권 또는 외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환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이다. 파생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통화선도거래는 선물환거래와 같이 일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약정가격으로 매입, 매도하기로 한 금융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그러나 통화선물거래는 거래형태나 방법에 있어 선물환거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거래동기에 있어서 통화선물거래는 일정통화를 장래에 실제로 인수,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물포지션과 대칭되는 통화선물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환리스크의 헤징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화 표시 매입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하여 장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약세실현에 의해 초래될 환차손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 수입업자는 달러화의 통화선물 매수포지션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원화의 약세에 따라 수취할 달러화 매입채무의 부채가치 증가를 달러화 통화선물 매수포지션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원화의 약세에 따라 수취할 달러화 매입채무의 부채가치 증가를 달러화 통화선물 매수포지션의 일일 현금 수지 이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한 환리스크 헷지는 낮은 거래비용과 포지션 조정의 용이성, 그리고 신용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 부채 Restructuring을 통한 환차손 상쇄 방안

## 1)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의 전환을 통한 환차손 상쇄 방안

기존의 외화부채를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원화차입을 하여 외화부채를 갚는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은 피할 수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또한 높은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의 개방 추세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에서 저리의 외화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7년 말 환율이 거의 두배로 상승하면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내금융기관에서 원화차입을 한 경우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많이 안정되었으나, 환율의 변동폭이 커져서 많은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영향이 없는 원화차입을 통하여 환차손을 피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즉, 환율의 상승과 환율 변동폭이 극심함에 따른 환차손을 회피하고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외화부채를 조기 상환하고 확정된 금융비용을 부담하여 계획적인 자금계획과 합리적인 재무제표 작성에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환율의 변동폭이 심하지 않을 경우 원화부채로 전환하면 현금의 유출이 있는 이자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2) 자본금 전환을 통한 환차손 상쇄 방안

기업의 외화부채의 주된 채권자가 해외에 있는 본점일 경우, 지점의 손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화환산에 관한 손익을 상쇄 시키고자 현재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때, 자본금으로의 전환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외화부채를 원화로 계산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인 납입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추가적인 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잉여금의 발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감면이익으로 해석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수증이익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자본보전을 위한 것, 즉 자본조성이나 결손보전의 성격을 가지는 자산수증이익은 기타 자

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한, 자본금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기업에서 얻는 환차손 상쇄에 대한 손익효과에 따르는 법인세법에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 제 4 절 우리나라 외화환산기준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외화 환산회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sup>31)</sup>

1) SFAS 52는 해외실체의 회계기록이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인 외화로 이루어지고 기능 통화가 보고통화와 다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회계기록이 기능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외화를 기능통화로 재측정하고 기능통화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2단계 환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능통화개념에 입각한 미국의 외화환산회계기준은 개념정의나 환산방법에 있어서 다소 복잡지만 기록통화, 기능통화, 보고통화가 모두 다른 상황은 발생가능성이 적다.

이에 비하여 IAS 21은 해외실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SFAS 52에서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SFAS 52 규정처럼 발생가능성이 적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통화개념을 외화, 기능통화, 보고통화로 정의하고 환산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IAS 21 규정처럼 해외실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지의 여부만을 고려하여 통화개념을 외화, 보고통화로만 정의하고 환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개념정의나 환산방법에 있어서 훨씬 간단하다.

2)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00%) 경제환경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 재무재표를 환산하는 데 있어서 SFAS 52는 단지 안정적인 통화인 보고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여 화폐성 · 비화폐성법

31) 박한순 “물가변동회계의 외화환산회계”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02.

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SFAS 89 역시 의무적인 이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물가상승을 무시하고 환산된 대차대조표 수치는 현행 측정단위를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은 물가변동에 의한 손익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제환경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에 대해서는 ISA 21 규정처럼 물가변동을 조정하여 환산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해외실체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에 물가변동회계를 반영할 때에는 SFAS 89 규정처럼 재 표시후 환산법과 환산후 재표시법을 모두 허용하기보다는 IAS 21 규정처럼 재 표시후 환산법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해외소재국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재표시하거나 해외 소재국 현행원가로 재측정한 다음 현행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때 일반물가에 대한 자료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국제금융통계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자료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행원가회계보다는 불변구매력회계가 보다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4)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라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 손익인 구매력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 명목화폐보유손익과 실질보유손익은 유지해야 할 자본개념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거나 환산조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 용어정의에 있어서, 결산일 환율은 현행환율이라 하고, foreign operation은 해외실체(또는 해외사업장), foreign entity는 독립된 해외실체(또는 해외사업장)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고통화와 외화, 모기업통화와 현지통화 등 통화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재무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해당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외화환산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칫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 재무제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

즉,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환율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환차손에 따라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해외차입에 제한을 받거나 금융조달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외화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미실현 이익 때문에 경상이익이 발생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화환산회계처리과정차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외화환산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고찰하였으며, 외화환산회계와 관련이 매우 높은 환율과 환위험의 종류, 그에 따른 외화환산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외화환산의 본질과 근본문제 및 기존 외화환산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있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외화표시 거래의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관한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외화환산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화표시 거래를 재구분하여 모회사 확장형태의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폐성 · 비화폐성법이나 시제법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해외사업장에 대해

서는 현행환율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통일적인 환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사업장의 회계처리기준은 모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물가수준변동이 극심한 경우에는 이를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은 외부적인 요구에 의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채 변경되어 왔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방법 및 회계처리는 매우 단순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를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평가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기업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외화표시의 거래환산과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고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환율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과 동일한 재정환율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여덟째, 현행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장기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이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실현 손익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홉째, 기업이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준수하면서, 자체적으로 외화환산손익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선물환 헷지를 통하여 환차손을 상쇄하거나,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여 환율변동성을 피하거나, 모회사 및 자 회사와의 관계라면 일정액의 외화부채를 자본금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는 부채의 리컨스트럭처링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차손 상쇄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취하기에는 우리나라 선물환시장이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외환거래법 및 법인세법 등 고려해야 할 제재조치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적

고찰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언급한 환산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외화 환산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환산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 ABSTRACT

Ko, Sung-Ho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economy are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or internationalization. It means that 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becomes more important.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currency is rather unstable and continuously varia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steep rising of exchange rate of won per dollar from 1996 to the end of 1997 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has become one of crucial accounting issues.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ttee (SFC) twice revised the provisions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in Korean GAAP. The revised provision of Korean GAAP at the end of 1997 allowed the accounting selection between the current gain or loss method and deferred charges method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 or loss related to long-term monetary assets and liabil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

Unfortunately,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 is not enough to cover the recent economic situ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ccounting standard.

This study reviews the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and preliminary draft of statement for the effect of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s, and compares the current Korean standard with US GAAP and IAS. With this background knowledge, this study examines overall problems of accounting for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and translation of foreign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 And then, it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concrete and consistent regulations of exchange rates, which are related to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method of foreign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llow each corporation to apply to foreign translations arbitrarily. It causes inconvenience to information users with the arbitrariness of exchange rate option.

Second,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are the managed current net-income, and differed assets of differed liabilities as a positive exchange rate adjustment or a negative exchange rate adjustment. It is possible for corporations to manipulate measurements currencies on purpose. Consequently, distinct and unified regulations are needed to prevent this possibility.

Third, comprehensive standards are necessary to deal with translation method of foreign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There is no rules to solve the possible translation conflict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Finally, it is necessary that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harmonious with International with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terms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method and the recognition of exchange gains and losses. Korean corporations tend to apply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o foreign fund, but they should make out financial statements with different standards in each countries. This practice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closing, this study is limited to fundamental literature review. It is hoped that future works focus on more concrete practice and need empirical study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 참 고 문 헌

- 강명구 “환차손의 상쇄를 위한 선물환 헷지방법”  
연구논문집 Vol. 57 No. 1. 1998
- 김병호 · 안영균 “외화환산 토론서 제13호” 한국회계연구원 2001
- 김병호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 2003  
외항해운기업을 참조하여.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127-152
- 김정수 「환위험관리 해법」 도서출판 두남 1998
- 박상호 “외화자산의 회계처리와 기업의 재무구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한순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02
- 삼일인포마인 「2001년 대비 법인 조정계산서 작성실무」  
삼일인포마인 2000
- 손기원 「기업회계기준과 실무전략」 경영베스트 1997
- 손일태 “해운산업의 외환관리현황과 환위험 회피방안” 1999  
한국해사재단 용역보고서.
- 송인만 · 김문철 「고급재무회계」 신영사 2000
- 송자 · 박준완 · 박찬정 「국제회계」 법경 출판사 1986
- 신호영 「고급재무회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심윤경 “환율변동이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 2002
- 윤평구 · 황인태 「알기쉬운 재무관리」 청록출판사 1999
- 이강일, 김천환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방법의 선택동기” 2000  
법인세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5 No. 1: 99-119.
- 이경욱 · 이정도 「재무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8

- 이대선 외 「꼭 알아야 할 IMF 회계상식」 율곡 출판사 1998
- 이영훈 “한국기업의 대외 거래시 환차손 극소화 제 방안”  
국제경영논집 Vol. 2 No. 1, 1987
- 이은주 “외화환산 회계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2002
- 조대우·황희곤·권태호. “한국 제조기업의 환율 변동에 따른  
회계적 환손익의 특성” 1997  
경영논집(충남대학교) (제13권 제1호): 1-23.
- 최종윤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1995
- 타카나시 토모히로 「위험관리 경영전략」 도서출판 두남 2000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회계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1999
-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기업회계기준 및 개정세법해설」  
대성회계법인 1999
- 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회계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 황인태.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와 기업의 특성” 1998  
회계학연구 (제23권 제1호): 51-76.
- 황조연 “장기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에 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세무학 석사학위 논문 2000

<http://www.fxkeb.com/FXKEB/main/pds/index.html>

<http://www.bizline.co.kr/library/data>